

□ 개정내용(신구대비표)

현행	개정(안)
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<중략> ○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※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<중략> ○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·관리하여야 함 - <u>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</u> -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-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-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 카드에 의한 결제금	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<중략> ○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※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<중략> ○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·관리하여야 함 - <u>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</u> -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-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-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 카드에 의한 결제금
■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. 인건비 <중략> <주요 집행제한 항목> ■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, 성과급, 직무교육비, 연수비 등 ※ 단,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인센티브(우수 강의평가 교원 인센티브 등) 지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, 합리적 수준의 지급 규모 등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■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,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(보고서 작성 수당, 사업운영위원회 수당, 보직 수당, 자체평가 수당, 정규강의 수당, 전산개발 수당 등) ■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■ 신입교원 연수비용 ※ 단, 비정규 강의,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	■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. 인건비 <중략> <주요 집행제한 항목> ■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, 성과급, 직무교육비, 연수비 등 (삭제) ■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,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(보고서 작성 수당, 사업운영위원회 수당, 보직 수당, 자체평가 수당, 정규강의 수당, 전산개발 수당 등) ■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■ 신입교원 연수비용 ※ 단, 비정규 강의,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

현행	개정(안)
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<중략> <주요 집행제한 항목> <중략> ■ 어학교육원,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·부설 기관 운영비성 경비(단, 해당 기관을 활용한 <u>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u>는 가능) <후략>	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<중략> <주요 집행제한 항목> <중략> ■ 어학교육원,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·부설 기관 운영비성 경비(단, 해당 기관을 활용한 <u>교육·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</u>는 가능) <후략>
5. 실험·실습기가재 구입 운영비 <중략> ※ 실험실습기가재구입운영비뿐만 아니라 <u>교육환경개선비</u>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 <후략>	5. 실험·실습기가재 구입 운영비 <중략> ※ 실험실습기가재구입운영비뿐만 아니라 <u>교육·연구환경개선비</u>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 <후략>
6. 기타사업운영경비 <중략> ○ 회의비는 대학 자체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<u>증빙 서류(회의록 등)</u>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※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<u>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</u> 등이 포함되어야 함 <중략> ※ <u>교육프로그램의</u>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‘<u>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</u>’에서 집행 <후략>	6. 기타사업운영경비 <중략> ○ 회의비는 대학 자체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<u>증빙 서류</u>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※ <u>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</u> <중략> ※ <u>교육·연구프로그램의</u>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‘<u>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</u>’에서 집행 <후략>